

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

의안 번호	61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5.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1. 제 안 이 유

- 농어촌정비법제42조 규정에 의거 시행한 제천시문화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마을하수처리장 및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천시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의 설치및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 요 콜 자

-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의 설치및운용에 관한 필요규정 명시
 - 세입재원의 명시 및 세출의 용도규정 명시
 - 회계 :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여 처리

3. 근 거 법령

- 농어촌정비법제4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9조제1항의 규정

첨부 : 1. 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
2. 기타참고자료(근거법령등)

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천시문화마을 관리특별회계(이하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입)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

1.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
2. 정부보조금
3.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금
4. 기타 잡수입

제3조(세출)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.

1. 택지 환수를 위한 반환금
2. 당해 지구에 필요한 공공 및 공동이용 시설등의 설치
3. 당해 지구에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
4.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구와 인접한 기존마을 정비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

제4조(준용)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천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第24編 農業 第2章 農地 農漁村整備法

의한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施行認可

- 第40條** (既存建築物의 撤去등) ①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者는 事業施行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게 된 기존 建築物(建築物에 딸린 畜舍、堆肥舍、便所等 附帶施設을 포함한다)에 대해 農地로의 轉換、주위비관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撤去 또는 移轉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②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者는 第1項중 撤去가 필요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費用을 補償할 수 있다.

- 第41條** (農漁村住宅등의 分讓등) ①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者는 生活環境整備事業施行에 따른 造成用地、農漁村住宅 기타 施設物을 換地하거나 分讓 또는 貨貸할 수 있다.
- ②造成用地、農漁村住宅 기타 施設物의 供給方法 등 節次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- 第42條** (技術支援등) ①農林部長官은 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으로 收益金이 발생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環境整備事業에 再投資하여야 한다. (改正 97·1·13)
- ②農林部長官은 生活環境整備事業의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 수립과 調査·設計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企劃·技術支援을 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경비는 象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(改正 97·1·13)

第6章 農漁村 土地등의 效率的 整備를 위한 換地、

交換·分合等

- 第43條** (換地計劃) ①農業基盤整備事業과 生活環境整備事業(이하 “農業基盤等整備事業”이라 한다)의 施行者는 農業基盤等整備事業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施行전의 土地에 대신하여 事業施行후의 土地를 정하고, 이로 인한 이해관계의 불利益을 金錢으로 清算하게 하기 위한 換地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換地計劃에 있어서 换地는 종전의 土地와 상응하여야 하되, 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에 따른 换地는 農業經營의合理化에 기여할 수 있도록 集團指定하여야 한다.

第24編 農業 第2章 農地 농어촌정비법시행령

장·군수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당해 계획서의 공고전에 시장·군수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시설물등의 명세
2. 분양 또는 임대대상자의 자격
3.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·방법 및 조건
4. 분양 또는 임대가격
5. 분양 또는 임대신청절차
6.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
7. 사후관리계획(임대의 경우에 한한다)

③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과 조성용지를 함께 분양하여야 한다. 다만,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성용지만 따로 공급할 수 있다.

④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을 임대할 때에는 임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사업이 시행된 읍·면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.

⑤ 농어촌주택의 임대보증 및 임대료·임대주택의 관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96·8·8>

제38조 (분양가격의 결정)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 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. 다만, 분양공고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사업이 시행된 읍·면지역에 거주한 자 및 당해 사업을 위하여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에게는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는 당해 사업비총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분양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.

제39조 (수익금의 관리 및 재투자)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할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·군수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회계로, 농어촌진흥공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